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61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김종양 · 신성범 · 김선교
고동진 · 서천호 · 김정재
배준영 · 성일종 · 이성권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이농, 국가·지자체 또는 학교·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

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을 “농지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②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를----- -----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③ ----- ----- ----- ----- ----- -----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
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
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3년-----

5. -----
-----1년-----

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생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u>3년</u>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 9. (생략) ②·③ (생략)	----- ----- ----- ----- -- 5의2. (현행과 같음) 6. ----- -----<u>1년</u> ----- ----- ----- ----- -----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